

# 가정상담

9 2021  
통권 457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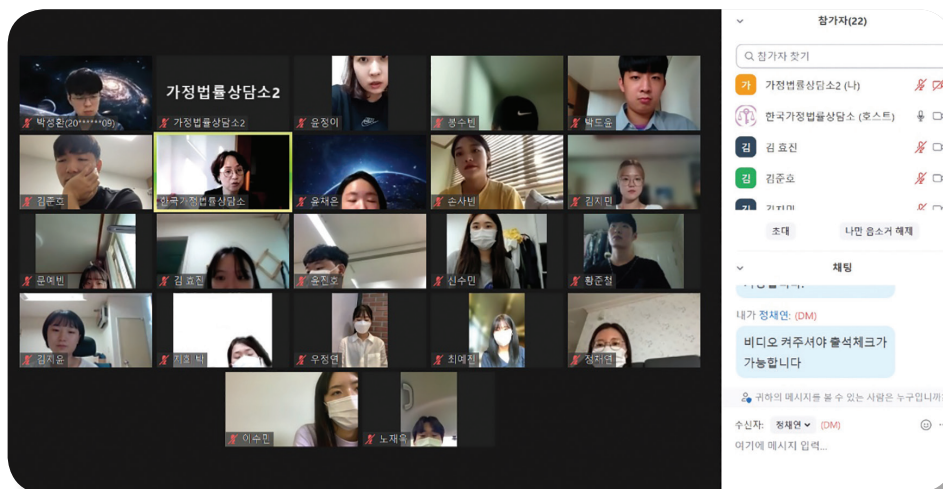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8월 24일, 8층 강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20일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소 이사의 유임 건을 인준하였다. (관련 기사 32면)



본소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과 30일 양일 간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일부 대면,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2학기 자원봉사학생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 32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후기
- 19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0 • 가정폭력상담실
- 24 • 어떻게 할까요
- 27 • 좋은 책  
    나는 네 Nez입니다
- 28 • 실습소감문
-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5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유리병에 튤립〉





## 가족정책 전담 부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날

지난 2004년 7월, 이 지면에 저는 “가족정책 전담 부서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당시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던 여성부 혹은 가족부에 대해 현장에서 바라본 현실을 기반으로 가족정책의 중요성과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바람을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상담소는 이러한 뜻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전한 바도 있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를 전신으로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어 2005년 6월 여성부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다시 여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 및 보육정책의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가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돌아오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을 위한 아동, 청소년 복지 및 보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출범부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오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이는 기대와 우려와 아쉬움과 다시 기대와 아쉬움을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5년은 상담소로서 새로운 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였지만 그동안 가족 여성의 문제가 다른 부서의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 놓여 있던 것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업무로 기능하게 된 여성가족부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바라 전담 부서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가정, 가족구성원을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에 상담소의 현실적 과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는 상담소는 문을 열었던 1956년부터 이미 민법상 친족·상속편 통칭 가족법과 관련하여 제정과 개정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왔고 이러한 활동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지속하면서 1997년의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와 2005년의 호주제 폐지까지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 온 상담소로서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세대, 계층간 갈등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발전적 논쟁이나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여성, 남성의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고 이러한 걱정스러운 상황에 정치권까지 개입하여 정부 부처의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현실에 직면하여 당사자인 여성가족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차제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다면 뜻있는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에 바라고 기대했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장관을 비롯해 그 안에 몸담아 일한 모든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존폐론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오고 보니 수 십년 간 여성의 인권신장과 법적 평등, 가족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상담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바라는 가족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왔는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과제와 역할,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고 그때그때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이를 통해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과제, 올바른 가족정책 등 정공법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며 스스로 위상을 세워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사회, 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현실, 저출산, 고령화, 일인가구의 급증, 요원한 성평등,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주제로 한 논점은 사회의 모든 과제와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가족부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는 깊고 넓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가족부 존폐를 선거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행태를 과감하게 돌파하며 스스로 중심을 잡고 여성, 가족이라는 현실의 과제를 바르게 보려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소와 저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던 그때 이미 2005년 11월 이 지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족정책 마련해야”한다고 진정한 바람을 썼습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 딛고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을 통해 우리는 성평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 복리와 같은 이상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건투를 빕니다.



## 특집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후기\* ①

# 위탁가정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을 진행하며

천 정 환

변호사(법무법인 현정, 백인변호사)

## 1. 들어가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백인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에 참여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건 하나 특별하고 안타깝지 않은 사건이 없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구조 사건은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위탁가정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조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위탁가정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등 사건과 관련한 소송구조사건<sup>1)</sup>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개인정보가 있어 필요 부분만 발췌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기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후견임무대행자 선임의 문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단독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판단 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존재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함으로써, 또다시 후견인 선임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례의 문제입니다.

\* 본소는 1972년 4건의 소송구조를 시작으로 현재 매해 1,000여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본소 변호사 및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구조는 매월 <가정상담>을 통해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직접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는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들의 소송구조 후기를 통해 본소의 소송구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련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1) 저는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인선임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성년후견인선임(35건), 미성년자 입양(2건), 미성년후견인 변경(1건), 특별대리인 선임(4건) 등의 구조사건(4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19건)을 제외하고 23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가. 사례 1

사건본인(2008년생)의 부모는 사건본인이 어려서부터 헤어져 지내다 2018년도에 이혼 후 친권자로 친부가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사건본인을 201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왔습니다. 양육하는 동안 친권자인 아버지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친모는 사건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본인의 양육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친권자인 친부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고, 친권이 상실되었을 때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도 함께 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친부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상실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친모는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sup>2)</sup>,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제한)<sup>3)</sup>,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sup>4)</sup> 또는 제927조 제1항(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sup>5)</sup>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제928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로 상대방의 친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모인 ○○○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위 규정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함께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고, 그 대신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임무대행자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할머니는 후견임무대행자로서 다시 사건본인의 관할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인 할머니를 선임하였습니다.

## 나. 사례 2

사건본인(2010년 생)의 부모는 동거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사건본인을 고아원에 보내려 하였으나, 차마 고아원에 보낼 수 없어 2012년도 겨울 무렵 사건본인을 삼촌인 청구인이 데려와 사건본인의 할머니와 함께 양육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아

- 
- 2)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3)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4)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5)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버지는 이혼 후 연락이 두절 된 지 오래된 상태였고, 어머니도 재혼하여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친권의 상실 내지는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건본인의 부모가 지금까지 전혀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까지 사건본인의 부모의 행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삼촌인 청구인은 민법 제924조<sup>6)</sup>에 따라 친권상실을 청구하면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친권자가 표기된 서류(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본인의 친권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건본인의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심판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사건본인의 부가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하고, 사건본인의 모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친모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친부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상실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의 협의이혼 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친권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내에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sup>7)</sup> 제909조의2 제1항, 제3항<sup>8)</sup> 참조).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상대방의 친권이 상실된 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단독친권자가 아닌 모의 친권자지정청구 여부를 기다린 다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그동안 사건본인을 보호해 온 청구인이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909조의2 제5항<sup>9)</sup>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본

#### 6) 주2 참조.

7)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8)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



인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부에 대한 친권상실선고판결은 되었으나, 이와 함께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삼촌이 단독친권자인 부의 친권이 상실된 사실을 사건본인의 모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 관할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 사례 3

사건본인(2007년 생)의 부모는 사건본인 두 살 때 이혼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아버지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어린이집(보육원으로 추정됨)에 맡겼고 이를 알게 된 할머니인 청구인이 어린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하여왔습니다. 친모는 이혼 후 2009년부터 연락두절 되어 사건본인의 양육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할머니인 청구인이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을 청구하면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문종결 후 사건본인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망 전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였고 친모는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친권상실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및 이를 전

제로 한 미성년후견인선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사망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종료선언을 한다. 다만,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을 보호해 온 청구인이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할머니는 단독친권자인 부의 사망한 사실을 사건본인의 모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 관할법원에 다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라. 느낀 점

(1)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단독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판단 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기 진행된 재판에서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였기에 본 재판에서 사건본인을 위한 미성년후견인선임까지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소송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권상실선고와 함께 청구 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에 대해 사례1 재판부는 미성년후견인선임의 근거로 민법

---

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928조를, 사례2 재판부는 민법 제92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고, 사례3 재판부는 친권자의 사망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㉔단4348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에서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사건본인들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가 없게 된 이상 민법 제928조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들의 조부모로서 상대방이 양육을 포기한 이후 사건본인들을 계속 양육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 보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종전 사례의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㉔단4348)을 참조하여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 청구와 함께 민법 제928에 근거하여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규정상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1항 제1호”와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에 따라 가능한 점, 일응 제927조의2에서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927조의2와 제928조의 적용순서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무엇보다 미성년후견인선임의 결정은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최종적 판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제928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 제909조의 2를 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의 경우는 제932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기에,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 내지는 제한이 이루어지면 미성년 보호를 위해 제928조 내지는 제932조에 따라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는 이상, 가사 재판부가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지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임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미성년보호제도의 취지 및 소송경제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하는 재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에 대해 의견조회 등을 통해 친권행사에 대한 의견을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을 그 후견인임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소송을 진행했던 대리인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 보다는 민법 제928조를 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선임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는 것이 미성년자보호 및 소송경제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 3.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하면 반드시 법원에서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받게 됩니다. 절차상 위와 같은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그 관리 주체가 법원이고,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경찰서 등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위 부존재증명서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인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4.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자로서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 재판 과정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위탁부모)이 민법 제932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인지에 대해 가끔 보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928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32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제도는 미성년의 복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위 청구권자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 ‘공공기관(○○시장)으로부터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민법 제932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므로, 사건본인이 유기아동으로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법원이 인지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후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위탁부모는 이해관계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친권상실 재판에 있어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가. 친권상실에 대한 재판의 관할은 상대방(친권자)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심판을 제기한 후 재판부로부터 보정을 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최초 제기했던 곳과 다르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나. 절차상 이송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은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재판과정에서 미성년에 대한 실제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매우 크기에 미성년자 관련 재판에서는 그 관할이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된다면 미성년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6. 결론

“양육하는 동안 힘든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가 내게 주는 사랑과 에너지가 더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라며 베이비박스에서 버려진 아이와 우연한 기회에 잠시 인연을 맺고 그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던 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미성년후견인 사건을 진행하면서 후견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낳은 정과 기른 정 중 어떤 것이 더 클까”에 대한 질문에 이제는 ‘기른 정이 더 크다’라고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의 보호와 복리가 그 본질이기에 이에 맞게 미성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를 작성하며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의 변화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

## 특집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후기 ②

# 70세 여성의 출생신고 소송구조 출생신고,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이 영 임

변호사(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백인변호사)

1. 1952년생인 A씨는 70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2021. 3. 2. 친모인 E와 유전자검사를 받았고, 친확률이 99.999%라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A씨는 출생증명서가 없기에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류구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권리가 있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이 진행되던 중 모 E가 사망하였는데, 구청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인데 신고의무자인 모 E가 사망하였으니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것이고, E와 A씨가 유전자검사로 모녀간임이 증명되고 그것이 가정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더라도 출생신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2. 그런데 A씨는 몹시 아프다.

원래 하나밖에 없던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지 오래여서 이노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다니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약 처방조차 꺼리고 있다. 그래서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약을 처방받으면서 지내왔고, 가정법률상담소의 지원으로 출생확인이 신청되자 출생신고가 되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다리고 있었다.<sup>1)</sup> 현재 A씨는 월 2만원 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픈 몸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야 주거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 콩팥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등을 뚫어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여야 하는 A씨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왜소한 몸을 간신히 누일 수 있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종일 그냥 누워있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A씨가 출생신고가 없어 법적으로 수술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술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출생신고가 없는 불가능하고, A씨는 그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전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3. A씨는 자신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66세가 되기까지 알지 못했다.

A씨는 예닐곱 살에 남의 집에 보내진 후 한 번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일 또한 식당일이나 공장일이었기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려고 하던 중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비용이 2~3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 온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되어 법률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의 부는 A씨가 태어날 즈음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난한 살림은 더욱 궁핍하여졌고,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언니가 어린 나이에 굶주림 끝에 병들어 죽게 되자 A씨 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 밥이라도 실컷 먹으라며 남의집살이를 보냈다. 그런데 그 집 할머니는 허드렛일을 하는 A씨를 몹시 구박하고 때렸다고 한다. 사실 6살이면 부모 품에서 재롱이나 부릴 나이인데 어리고 왜소한 A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할머니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A씨는 주인 할머니의 구타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 어렸기에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였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다.

어쨌든 집을 나와 생활하던 A씨는 오빠 이름과 자신의 집이 김천이라는 것, 그리고 집 앞에 개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후 기억을 더듬어 개울을 따라 가며 고향 부근에 오게 되었는데 이미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가족들을 기억하는 고향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놓고 왔고 여러 번 찾아간 끝에 오빠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두들 가난하였기에 함께 살지는 못하였고 A씨는 가끔 오빠 집을 오가며 지냈으며 나아가 되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A씨는 더욱 자신의 출생신고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은 1968년이고 지금의 체계를 갖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시작된 것이니 아마도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계도기를 거치면서 A씨 가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1952년생인 A씨는 어찌된 일인지 1956.5. 10.생으로 등록이 되었다.

### 4. A씨는 소송과정 또한 그 고단한 삶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1) 모두에게 당연한 출생신고가 A씨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애를 먹고 있듯이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출생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2021. 3. 16. 유전자검사결과까지 첨부하여 출생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3. 17. 보정권고가 나왔다.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자녀로 A씨와 동명인 B와 55. 11.생인 C가 있는데, B는 A씨와 동명이라는 이유로 C는 1956. 5. 10.생인 A씨와 터울이 6개월 이내이므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4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09호에 의하면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미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게 되어있다.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09호])

대리인은 가정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B와 C는 모 E의 자녀가 아니며 A씨 실제 출생년도 또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담당자는 어쨌든 위 두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는 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가정법률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위 두 사람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법률구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비송사건인 출생확인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소취하를 한 후 다시 소제기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은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사건이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A씨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말하고 그대로 유지시킨 채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송의 진행경과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어머니와 유전자검사까지 받았으니 곧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A씨는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또 소송을 해야 한대요?’, ‘뭘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엄마하고 유전자검사를 받아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도 안 되는 건가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A씨는 B나 C와 전혀 연락이 없이 살아왔다고 그들이 유전자검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오빠가 사망한 후 올케와도 연락이 끊어졌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한숨 속에서 지내던 A씨는 어느 날 전화를 하여 C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유전자검사를 부탁하였다고 하였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해줄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B는 7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꿈꿨냐며 유전자검사를 절대 해줄 수 없고 협조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B는 암으로 투병 중이라 매우 날카로운 상태였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전화통화도 곤란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두 사람의 주소는 대구였다. B와 C가 유전자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와야 하는지, 친모가 있는 요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하였다. 또한 A씨는 1인당 15만원 가량하는 유전자검사비용으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방법과 비용을 알아보면서, 가정법률상담소에 유전자검사에 대한 비용지원도 가능한지 문의하고, A씨와 매일 전화를 하며 B와 C를 설득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며 몇 차례 C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이전 A씨와 친모 E가 검사한 기관의 지점이 대구에 있어 B와 C는 대구에서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친모 E는 다시 채취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검사비용이 지원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C에게 ‘대구가정법원앞이 있는 검사기관에서 잠깐 피를 뽑고 사진을 찍으면 되고, 유전자검사만 하면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 검사를 안 해도 법원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어차피 해야 하기에 절차만 더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수차



레 전화가 오가고 유전자검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리인은 2021. 3. 24. B와 C가 모 E의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의 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서류가 제출되자 즉시 변론기일을 잡아주었고 2021. 6. 25. 판결 선고 후 다음날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 그리고 2021. 7. 15. 대구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소는 확정되었다.

확정일인 7월 15일 대리인은 대구에서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4중 추돌로 3시간 정도가 지체되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로 복귀할 수 없었다. 그런데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를 하여야 했기에 그날 확정관련 문서를 포함한 등록부정정신청서류를 준비해 주기위해 고속도로 위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A씨는 간신히 구청업무시간 중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구청에서는 대리인이 그 절차에 대해 구청에 미리 문의하였을 때 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빠르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청을 하러 간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을 본 구청 담당자는 그 다음날 처리를 해주었다. 그렇게 등록부정정을 마치게 된 후 이제 어려운 일은 끝난 줄 알았다.

(3) 그러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출생확인서가 발급될 것임에도 A씨는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는 정정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을 하겠으니 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였고 대신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담당자는 처리 도중 A씨의 모 E씨가 소송 도중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대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7. 16. 금요일에 긴 통화를 하였다. 담당자는 월요일에 이를 가정법원 원

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하였고, 월요일 오후 연락을 하여 주장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7. 20. 화요일 출생확인서가 송달되었다. 대리인은 즉시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제야말로 정말 끝났는 줄 알았다.

## 5. 그러나 A씨의 출생신고는 또다시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구청의 논리와 태도는 단호하였으며 매우 견고하였다.

(1) 7. 20. 출생신고처리를 위해 구청에 갔던 A씨는 또다시 전화를 했다. 구청에서는 출생신고의무자를 문제 삼으며 친모 E가 사망하였기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리인은 죄 없는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자를 붙잡고 2, 3일간 긴긴 통화를 하였지만 답은 없었다.

이에 대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구청담당자는 그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생존하여있음에도 출생신고하지 않고 학대 등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내부지침이라고 하였는데 자신들은 그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A씨의 주소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소지 구청 또한 위 내부지침을 언급하며 이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으나 출생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출생신고는 전국 아무데서나 하면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다시 같은 내용의 말이 오가고 무수히 전화를 하였으나 해결될 가망은 없었다.

결국 대리인은 지푸라기를 찾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법을 잘 아는 구청장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푸라기는 결코 동아줄이 될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출생신고의 문제였다.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 된다고 한다는 그 논리를 아무리 해도 납득할 수 없었다.<sup>2)</sup>

(2) 결국 구청에서는 대리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구청에서 회의를 거친 결과 자신들은 결정할 수가 없고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하여 그 답변에 따라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며 몇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이 알아본 바로는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이 이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고 구청에서 스스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는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은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 6. 대체 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제1항에서 출생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혼인의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

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이 경우는 ① “신고의무자가 제 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사실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구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부모가 생존해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를 말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법문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해석이다.

게다가 법 제정 또는 개정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제·개정 이후에는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는 출생신고의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법 제46조 제4항을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거나 ‘미성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법의 문구에 반하며,

2) 이에는 물론 다른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불가능은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대법원2020스 575).

3) 제46조 (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이나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신고의무자가 ‘부’ 또는 ‘모’이고 신고의무자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에 이 경우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7년 경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다’는 예규가 있기는 하였으나, 2016년에 법 제46조 제4항이 신설되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상 더 이상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가족관계창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출생신고의 본질과 관련하여 볼 때,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지만 출생신고가 없이는 사회적으로 그 존재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출생신고가 쉽게 되도록 국가가 협조하고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UN 산하 위원회나 국제 인권단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UPR(유엔정례인권검토)에서도 매년 지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는데 부와 모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가족관계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거나, “출생신고자가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가족관계창설신고의 대상이 된다.” “법 제46조 제4항은 미성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부모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본질에 반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7. 더 이상 물러설 수도, 가망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구청장을 수소문하는 것보다는 법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누구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에 그냥 대리인 이름으로 검찰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에 따른 출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검찰청 민원실로 갔다.

그러나 이를 접수할 창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창구나 번호표를 뽑아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상황을 설명하니 창구 담당자는 3, 40분을 여기저기 문의하고 알아보아 주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고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A씨는 출생신고가 신속하게 되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며,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선택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결국 위 신청서는 2021. 7. 23. 접수번호조차 받지 못한 채 민원창구에 제출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독촉 끝에 2021. 7. 29. 위 사건이 진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사실에 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리인은 위 검사실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후 처리경과를 문의하니 다른 검사실에 재배당되었는데 아직 전산처리는 안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21. 8. 4. 다른 검사실에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검사실에 의견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지만 위 검사실에서는 “법리가 복잡하여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리는 매우 단순하며 결코 법리가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았고 출생



신고를 위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법률에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다. 게다가 출생신고의 중요성이나 출생신고가 국민 각 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사건 A씨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일 뿐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20스 575).

(2) 대리인은 날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A씨에게 자필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하였다. 원래는 고시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써오고 사무실에 와서 A4지에 다시 써서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씨는 탄원서 2장을 쓰는데 4시간쯤 걸렸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A씨가 가져온 탄원서 내용은 너무나 절절하였고 진심이었다. 이에 A씨의 탄원서를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그날 A씨는 자신이 검찰청에 가서 제출하고 싶다고 하여 봉대로 발목을 칭칭 감은 다리로 검찰청 민원실에 대리인과 함께 가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 A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거의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사실과의 전화통화에서 파악되는

내용으로 볼 때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8. 결국 고민 끝에 법무부에 또 다시 진정을 하게 되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국민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 민원실에서도 그 담당부서에 대해 낯설어 했고 오랜 대기과 여러 차례의 통화 끝에 법무심의관실에 접수가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법무심의관실과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담당검사실에서 전화가 두 차례 왔고, 출생신고가 안 되면 병원의료비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로 하여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통화시 이제 모든 서류를 받았고 담당검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A씨의 출생신고는 ‘아직도’이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고 A씨의 건강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하루가 일 년처럼 흘러가고 있다.

● 그 후 9월 2일 검찰에서는 ○○구청에 출생신고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현재 ○○구청에 계류되어있다.

구청에서는 수리 여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공식 답변을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답변을 받는 대로 출생신고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

[illegible]

## ◀ 친필 탄원서

Date

것은 연중의 실행에 신중함이 부족하고  
 항상 일관결단력이 없기나 굳어진 관습을 갖  
 고의 잘못을 할때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어  
 있는도 한두번의 위악과 착오에는 결코 내성  
 안하는데도 양악소리에 쉽게 속아 또개해  
 실수를 범고 발악하는데 이러한을 보배처럼  
 삼고있는 것이 개성품이 많은 지도자를 찾아보면  
 실로 인간적인 것이나 두근두근 연약하기까지도  
 하여야 하는 위악과 양악에 대한 개성품이 한  
 줄이나 간혹은 한두번의 착오로 인하여 지음의  
 잘못을 범하고는 비록은 그러하더라도 처벌이나  
 그로서 엄연히 해하고 재악을 연중이 한 것  
 뿐한 양악소리에 대해서도 끝없는은 끈질기다  
 한사람의 끈기나 무뎠음은 지음의 잘못을 오히려  
 오히려 끈기나 끈고도 한두번의 착오가 거듭나  
 면서 더더욱은 양악소리에 연약하여 양악에서  
 의 지향하기에는 오히려 해악이 많아서나  
 지음의 끈은 세미하고 끈고의 절제나 아니  
 하여야 하는 이허가조는 의지적조는 양악  
 소리에 연약하여도 양악에서 해악은 해악조는  
 없는가 아니다고 할때나 양악조는 양악에서  
 오히려 끈기나 끈고에 사소한 실수나 양악  
 소리에 연약하여 양악조는 양악에서 해악조  
 고하고는 양악조나 지음 소리에 연약  
 가 양악조나 지음 소리에 연약하여 양악조  
 정정양악조는 양악조는 양악조나 지음 소  
 리에 연약하여 양악조는 양악조나 지음 소  
 리에 연약하여 양악조는 양악조나 지음 소  
 리에 연약하여 양악조는 양악조나 지음 소

## 창립 40주년의 해 (1)

- 1996년 5월, 9월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10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등



상담소의 설립자이며 소장이었던 이태영 박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하고 1995년 2월 상담소는 이사회를 열어 이태영 소장의 후임으로 김홍한 이사를 선임했다.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한 김홍한 소장은 취임 이후 약 10개월 동안 상담소의 실태 및 연혁,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파악에 힘썼다. 김소장은 초기에 이태영 전 소장이 해왔던 일을 대과 없이 이어 수행해야 되겠다고 노심초사하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상담소의 조직화, 체계화에 주력하면서 정관을 비롯하여 공적기관으로써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규정들을 신설하고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해 나갔다.

상담소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재정문제였다.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제일 중요한 재원이었고, 여성백인회관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약간의 자체 수입이 있긴 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했다. 특히 김홍한 소장은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상담소의 장기적인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상담소는 물론 김홍한 소장에게도 커다란 과제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담소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필요한 물품과 사무기기를 기증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국내외 회원들이 있었기에 상담소는 절약해가며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다.

김홍한 소장은 1996년 새해 메시지에서 상담소 운영의 주요 목표를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동, 봉사의 질적 향상, 사무의 능률 극대화, 불합리한 요소의 제거, 필요 인력의 증원, 처우의 점진적 개선, 임직원의 복지 향상 등으로 삼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11월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과 인사 및 복무규정, 지부에 관한 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1996년은 상담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전쟁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불모의 땅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렸던 상담소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것이었다. 상담소는 1996년 창립 4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의 가정문제 전반을 살펴보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준비했다. 먼저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5월 21일에 '재혼, 그 또다른 시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는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정의 실상과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 지향점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제2정무장관실의 후원을 받아 9월 11일에는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러한 상담소의 움직임들은 1998년의 가정폭력특별법 제정과 시행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재혼가정의 문제도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웃의 신고. 법적처리 거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상담 통해 행동 양식의 변화 이어져

2019버3\*\*\*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6회  
부부상담 5회 등 25회

상담기간

2019. 12. 24. ~ 2020. 9. 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9년 되었다. 부부 사이에 2남이 있었으나 각 2살 때 모두 희귀병으로 앓았다. 피해자는 청각, 언어장애 1급으로 평소 부부는 수어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였다. 행위자는 2019년 9월 사건 당일 집안청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청소기를 집어던지고, 밥상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일을 배우려 간 옷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SNS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려면 수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여 독학으로 수어를 배웠고 피해자와 30%정도 수어 대화가 가능하다. 행위자는 다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지만 피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 처가 식구들이 아이들을 잃은 모든 책임을 행위자와 행위

자 가족에게 전가하여 행위자는 우울증에 걸렸었고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3년 전부터는 처가에 가지 않는다.

부부상담시 3회는 행위자의 수어통역으로, 2회는 영등포구 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지원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초상담 이후 2회 피해자와 갈등이 촉발하여 이혼을 고려하였지만 다시 화해하였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바라는 바는 1) 집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2)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기 3) 술을 마셔도 10시 안에 귀가하기 4) 피해자가 하는 살림 방식에 간섭하지 말기 5) 깨끗이 씻기 6)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해도 상을 얹지 않기 등이었다. 행위자는 이를 실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저축을하기로 약속하였다. 코로나19 대응조치로 대면상담이 중지된 기간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부부의 생활을 점검하였는데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부부상담을 재개하였을 때 개선 요인에 대하여 행위자는 피해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한 점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간섭이 없었던 점을 들었다.

상담 중기 이후 부부는 다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였는데 특히 행위자는 피해자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침내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이혼은 3개월 후에하기로 하고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부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을 폭력으로 표출하였다. 언어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어장애인과의 결혼생활은 매우 힘들고 특별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생활방식을 보면 부부는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12월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여야 하므로 의견충돌시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부부의 다짐을 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19버2\*\*\* 특수협박, 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4회, 집단상담 1회 등 총13회

#### 상담기간

2020. 1. 10. ~ 2020. 8. 24.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7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7월 사건 당일 일상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덜미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주방 식탁에 놓여있던 과도를 거실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압수된 과도 1개는 법원에서 몰수하였다.

부부의 현안은 자폐기질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 문제이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업주부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행위자보다 적고 늘 행위자에게 아이를 더 많이 돌보라고 하며, 행위자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재촉하고, 가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집을 잘 정리하지 않았다. 행위자 자신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몫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혼도 고려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불만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도록 하니 피해자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특히 오랜 기간 교제하고

결혼한 때문인지 피해자는 결혼후 행위자가 변했다는 불만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생각과 욕구 등을 확인하고자 4회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상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행위자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실패, 피해자 관점에서의 이해 부족, 감정 조절 실패 등으로 본 사건과 같은 과격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고, 일과 가정, 아이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하였다.

상담종결 시 행위자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폭력을 한 사실을 후회했고, 이후 폭력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늘 이를 유념할 것이므로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며 피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행위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쌍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 부부관계 만족도가 사건 당시에는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7~8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유념하고 향후 피해자와 이견이나 갈등 발생 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19버1\*\*\* 상해,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6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4회

#### 상담기간

2020. 1. 10. ~ 2020. 8. 24.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 지 2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8세, 25세)가 있다. 부부는 포장마차음식점

을 하는데 행위자는 매일 일하고, 피해자는 1주일에 3일 정도 일을 돕는다. 행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1년에 하루만 쉬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후부터 외출이 잦아 불만이였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 어디 갔었는지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쥐어뜯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폭력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부부는 화해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이후 외출을 자제하고 행위자의 뜻에 따라 가게일과 가사에 임하여 갈등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이웃의 신고로 사건처리가 되고 행위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많이 놀란 것이 이후 변화를 이끈 큰 요인이었다.

행위자는 오후 4시에 가게를 열고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여 상담시간에 제약이 있었기에 개별상담 중심으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으나 당뇨와 혈압문제가 있어 사건 이후에는 절주한다고 보고하여 현재의 절주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실천과제로 부과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갑자기 폭력을 한 것이고, 평소 부부싸움이나 갈등원인은 특별히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자가 평소 욕설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욕설을 하여 불편하므로 욕설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기를 바랐다. 이에 행위자에게 비폭력대화법에 대하여 인식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폭력대화의 문제를 피해자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이 중지된 기간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코로나사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점을 제외하면 피해자와는 갈등요인이 없고 폭력을 재발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음식 장사를 하다보니 행위자가 음주를 할 기회가 많은데 한달에 한번 이상은 음주하지만 이전에 비하여 횟수가 많이 줄었고 욕설도 줄었다고 변화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은 안전하며 행위자를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에게 절주와 비폭력대화 노력을 당부하고,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19버2\*\*\* 특수상해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9회

### 상담기간

2020. 2. 10. ~ 2020. 8. 25.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배달 전문 식당을 한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성질을 낸 것에 화가 나서 간이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의 몸으로 2~3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얼굴과 왼팔, 왼발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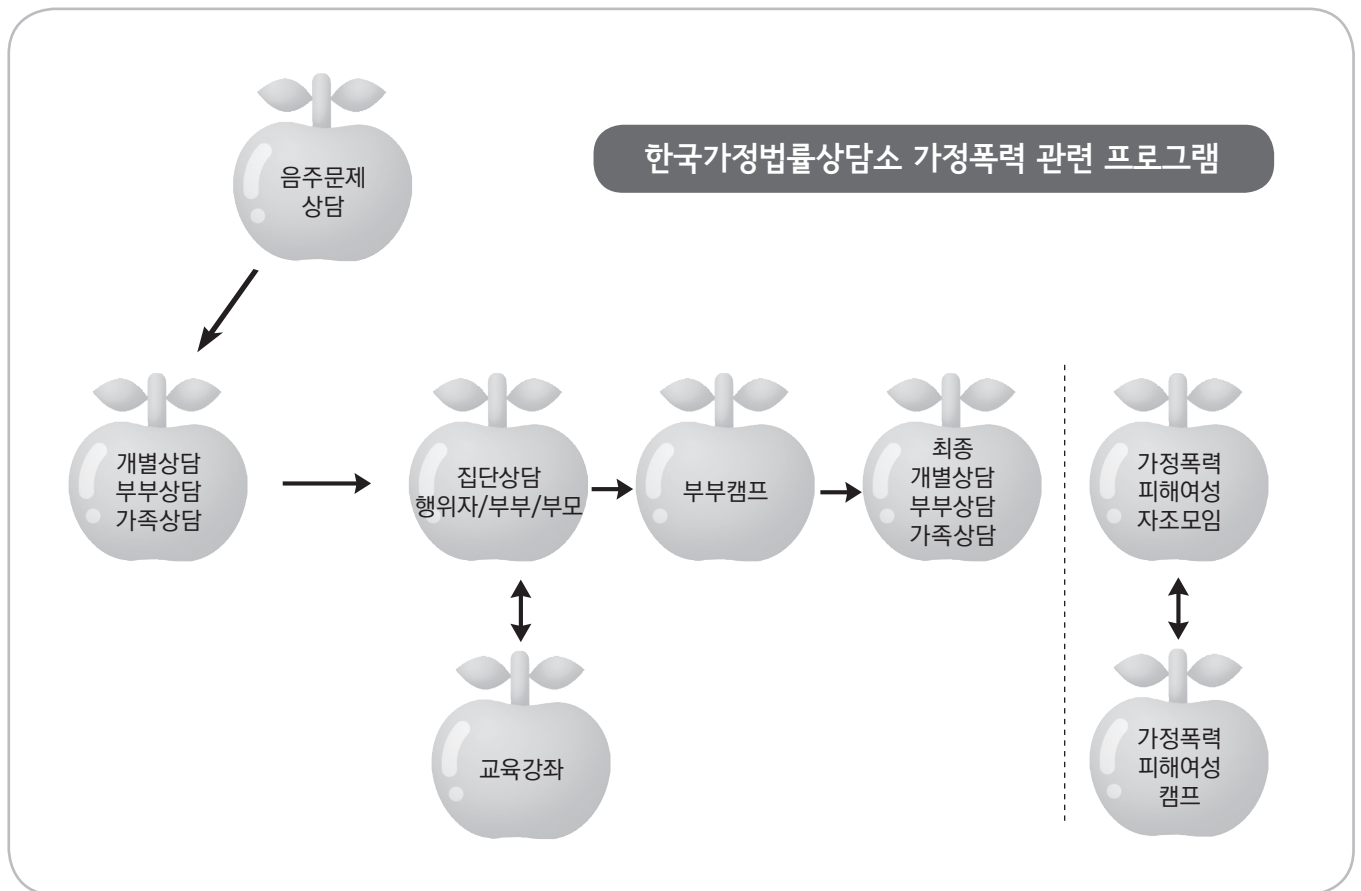
행위자는 365일 영업을 하고 수면시간이 평균 3시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가게일을 열심히 하지만 경제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와의 갈등원인을 성격차이와 경제문제로 꼽았다. 사건 이후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져 행위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에서 지냈으며 피해자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

주고 빨래도 해주었으며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였지만, 접근금지기간 경과 후 집에 들어갔다.

행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 감정을 조절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벌기로 동생과 약속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 10년간 자신은 일만 하고 쓰는 돈은 하루에 담배 두 갑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돈은 다 피해자에게 주었고, 집 청소, 밥하기, 심지어 고양이 돌보는 일까지 다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내가 이렇게 까지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도 내게 이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였고, 그 기대한 바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실망, 분노, 억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과거 자신이 한 부정적 감정 표출을 피해자가 속히 잊기를 바랐다. 또한 이전에는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주었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행위자가 쉽게 화를 내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집을 나가 혼자 살며 재결합의사는 없었다. 두 사람은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필요시 전화통화도 한다. 향후 피해자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행위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다. 행위자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헤어질 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오랜기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고 피해자의 마음을 붙잡을 생각도 없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갈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을 하지 않고 해결할 자신이 생겼다고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사 실 혼 ④

##### ●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결혼식은 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학대하며 내쫓아 친정에 와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 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니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사유가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불법행위를 한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Q**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이미 이혼했고 다시 정식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 해 주어도 된다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지요?

**A**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남



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Q**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한편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재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귀하의 경우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으므로 위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예물과 예

### ●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귀하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Q** 저는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을 만나 2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는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상대방이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아내와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판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 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 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Q**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시 중국으로 갔고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로 하였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한 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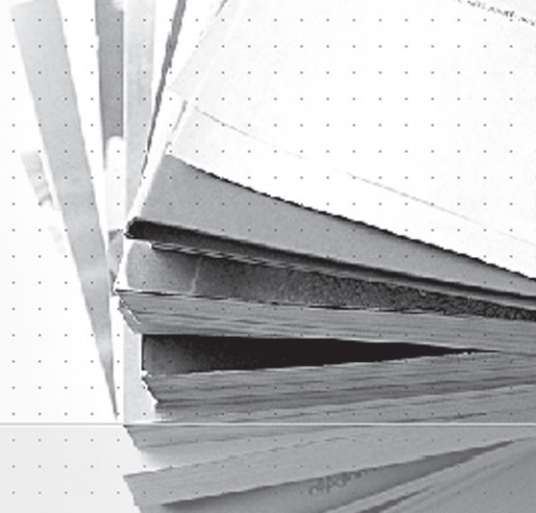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김진영 상담위원





어릴 때, 엄마의 장롱인지 안방의 벽장인지에 서 말았던 코티본의 향기 그리고 봄밤 우리집 마당을 넘어 골목에 퍼지던 라일락 향기, 이렇게 향은 추억과 같이 온다. 마치 프루스트의 마들렌과 홍차처럼.

요즘 가장 좋아하는 때는 주말 아침에 부엌 창을 통해 북한산을 보면서 원두커피를 내리는 시간이다. 원두커피를 핸드밀로 갈아서 핸드드립한 커피는 향부터 행복하다. 어떤 비누의 향은 지극한 행복이지만 모든 향이 그런 것은 아니다. 취향의 영역일 것이다. 한 번 꽃힌 향수를 계절 내내 쓰는 편인데 가끔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 향수 냄새가 곤혹스럽다는 글들을 보면 뜨끔할 때도 있다. 나 역시 예전 누군가의 '쁘와종'은 참 싫었기 때문이다. 디올의 향수 '쁘와종'은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난 감이 있지만 나름 향수의 스테디 셀러인데 난 그 향수를 쓰던 사람이 별로였던 모양이다. 지금은 니치 향수의 시대인 것 같다. 암튼 잘 모르지만 난 향수를 좋아한다 정도로 정리된다. 그래서 이쯤에서 A부터 Z까지, 항목별로 총망라한 향수 매뉴얼 『나는 네Nez입니다』를 읽었다. 사실 이 책은 올해 초 신문의 신간 지면에 서 보고 일찌감치 사 두었던 것인데 천천히 읽었고 책의 절반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으로 향수 관련 용어를 정리한 일종의 사전이기에 앞부분 저자의 에세이 부분을 읽고 용어 부분은 띄엄띄엄 읽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도 재미 있었다.

사실 책 소개를 겸한 신문 인터뷰에서 내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자가, 내가 좋아했던 너무 일찍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안타까웠던 소설가 김소진의 아들이라는 점이었고 조향사가 된 그 아들의 아버지인 김소진은 '아노스미(Anosmie)' 즉 후각상실증이었다는 대목이었다.

향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흔하지 않은 조향사가 되었고 그 길에 대해 진솔한 에세이와 일종의 사전을 엮어낸 저자에게 그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보았다는 점은 조금 미안했지만 그래도 김소진과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사별했던 그의 아들을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매개로 만나게 된 것은 나만의 일방적인 기쁨이기는 하지만 기쁘고 반가웠다.

지은이 김태형 조향사는 세계 향수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교육기관 이집카 ISIPCA를 졸업했으며 현재 향수 브랜드 에트르라의 대표 조향사로 일하고 있다. '네Nez'는 코라는 뜻이다.

비염 환자로 한절기를 재채기와 콧물로 먼저 느끼는 내게 코는 각별하다. 그리고 코를 통해 감각을 깨우는 향수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숙현 편집부장

## 나는 네 Nez입니다 김태형 에세이

김태형 지음

난다, 202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여름 방학 기간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의 소감을 신는다.

### 한 해 인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유아의 기질과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퍼진 상황 속에서 유치원 실습을 하며 원격수업의 실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유아들이 가정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차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불화, 더 나아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시작된 고민은 “가정 문제를 어떠한 법률적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의문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면서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상담소의 법률구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던 과거가 후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참관, 소송구조 관련 서류 작성, 전화상담 등 다양한 법률구조 업무를 하며 막연하게만 다가왔던 가족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알아가게 되었고,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배우면서 연수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며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전화상담은 주위담을 수 없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이라는 폐쇄되고 제한된 환경이 내담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과 상담자의 말과 답변이 내담자에게 생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점차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연수 시, 하나하나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가정의 형태가 각자

다르듯, 한 상황에 대해 한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님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문제는 저마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는 개별적인 문제와 개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가정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정 문제를 비슷한 문제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고, 더불어 법률구조 업무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이라는 팸플릿 문구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현장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에 한계가 있으면 어쩹하나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도 지난 두 달은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너무나 유익하고 보람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귀중한 시간들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유능하면서도 가슴은 뜨거운 법조인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소장님 이하 상담소의 모든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훗날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 김 은 빈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실제로 법이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 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법조문이나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강의를 들으며 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서의 법의 모습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던 2달의 현장실습 기간이 어느새 끝나가고 이렇게

소감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화상담 연수를 비롯하여 상담참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사이버상담 답변서 작성, 가정폭력 상담 및 치료 경과보고서 작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연수 등 연수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전화상담 연수입니다. 비록 전화상담은 어렵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인터넷이나 상담소 자료 등을 열심히 찾아보며 법률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연수를 통해 가족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가족법에 관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가사사건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소에 방문하는 여러 내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상담참관 등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해결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한 사건이라도 여러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률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저로서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소에서 업무를 하였을 때는 상담소의 업무들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담소의 업무 특성상 글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법률구조 서류의 양식에 따라 정확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노력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피드백을 받으며 많이 배우고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현장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달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실습의 기회를 주시고,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소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 유 나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이태영 박사님을 보며 법조인의 꿈을 꾀왔던 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 써오셨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에서의 근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희 실습생들에게 주어진 일은 전화상담연수, 상담소 업무지원, 법률구조업무연수, 사이버상담연수, 현관 내담자 안내, 상담소 홍보 등이었고 법원 출장상담 및 상담소 면접상담 참관도 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법학도로서 많은 법률공부를 해 왔지만, 전화 상담연수 시 각기 다른 가정환경과 사정으로 가지는 다양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정 법률 상담사례집인 '어떻게 할까요?'를 정독하며 중요한 부분을 한글 파일로 정리해 놓거나, 가족법 및 가사소송법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점 가정 법률에 대한 지식이 쌓여갔고, 이에 따라 내담자의 다양한 질문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이혼·피해자 보호명령청구·출생신고·양육비이행명령청구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 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언제든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큰 도움을 받았으며 고마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상담 연수를 할 때는 내담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화로 사정을 듣는 것보다 더욱 어려웠지만, 제가 작성한 답변과 지도 선생님의 피드백을 비교해 본 것이 내담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고, 관련 판례를 찾아 읽어봄으로써 저에게 살아있는 법률 공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2번의 법원출장 상담참관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직접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드라마 속에서만 보았던 가정법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참관 전에는 기껏해야 이혼과 관련한 상담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귀화 후 본 창설·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 정정·실종선고심판·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등 정말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소송구조 대상자 분의 진



술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분은 우연한 기회에 생면부지의 중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도움을 청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을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글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내담자의 진술을 들으며, 이혼소장 청구원인의 기본이 되는 본인진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는데, 굉장히 보람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처음 보는 사람과 서류 상 혼인하게 된 본인이 직접 혼인무효, 또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법적절차를 피해자가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책상 앞에서 가족법 교과서를 뒤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값진 배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실습활동을 묻는 후배가 있다면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연수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구 평 우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오기 전 실습 경험이 있던 선배, 동기들을 통해서 실습에서 느낀 점, 하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전화상담 연수, 법률 구조 보조 업무들을 연수활동으로 한다고 하여, 오기 전에는 큰 부담이나 어려운 일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현장실습을 하면서 법률관련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현장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가족법에 대한 법률지식인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가족법을 들어본 적이 없고 법학개론 또는 민법총칙 상에서 가볍게 설명하는 가족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이번 현장실습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상담 연수와, 기타 가족법 관련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가족법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알아가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떠한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의 논리를 펼쳐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의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은 한 사건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법률적인 사건 혹은 사례에 대해서 관점이 충돌하는 것을 실제로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법률적인 사건을 접하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하자”이기 때문에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여러 관점들을 관찰하며 한 사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치는 지금 느끼는 바는, 현장실습이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며, 저의 생각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건,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제 삶에 적용시키고 싶은 것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들을 이해하여 법률적인 사건을 접할 때 실체적 진실탐구와 함께 공정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으며 제 인생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아울러 실습의 기회를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이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 해 웅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간단하게 상담소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여태까지 대학에서 배운 민법, 가족법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OT 자료 등을 참고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 연수를 하면 할수록, 법률적 지식이 제게 부족했음을 깨달았고, 더욱이 상담 관련 업무에는 법률 관련 지식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상담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며 배워나

갔던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쳤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은 아직도 보이고, 또 배워나가야 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배워서 채운 뒤,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난 뒤 느꼈던 행복감과 뿌듯함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제가 희망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사명감을 이전보다 더욱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했던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짧으면서 동시에 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습 활동이자 가장 많이 했던 전화 상담 연수와 상담소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셨던 여러 법률구조 업무들은 저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여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매우 짧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반면, 실습 활동들을 통해 상담자로서 역할, 기타 업무 수행자로서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사안에 정답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대답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게 만드는 실습 활동은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에서의 실습은 단순한 소송 구조와 절차,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리걸 마인드, 그리고 세밀한 업무 처리 방식까지 배워갈 수 있었던 다채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담소에서의 실습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지와 더 많이 배워나가려는 의지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실습에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함께해주신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실습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진솔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조인을 꿈꾸는 저는 그동안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이론 강의를 배웠으나,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으며, 실습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현장실습연수활동을 오기 전, 법률상담의 과정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쌓기를 기대하며 현장실습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법과 상속법 등 민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장실습의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전화 상담 연수를 하고, 면접상담에 참관하고, 관련 법률구조업무를 연수(본인진술서 작성, 법률구조신청 사건 서류정리 등) 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활동을 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로는 이혼, 가정폭력, 상속 등이 있다는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며, 이혼, 가정폭력, 상속 등에 있어서도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뉘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련된 전화 안내 연수를 하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면접상담에 참관하고, 서울가정법원 내 출장상담을 참관하면서 법률상담의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없을 경우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안내하게 될 수가 있고, 다른 내용을 안내할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들이 또 다른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정확한 법률지식과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정보를 파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원활한 상담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전화 안내 연수 시 이러한 점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간의 연수활동을 마치며, 한 달의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단순히 연수를 완수하는 것이 아닌, 저의 진로와 관련된 연수활동을 통해 법률구조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더욱 보람찼고, 많은 지식들을 배웠기에 연수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단순히 현장실습 수료에 그치지 않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회에 공헌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의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현장실습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임시 총회 개최

본소는 8월 24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차명희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시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 총회는 지난 7월 20일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소 이사의 유임 건을 안건으로 하여 열려 이를 인준하였다. 이번 임시 총회에는 공증을 위해 노동선 변호사가 참관하였다. (관련사진 2면)

## 건강가정진흥원과

###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3일 본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협약은 각 기관의 사무실에서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소는 2015년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양육비 사건을 위탁받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종전 업무협력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본 협약에서는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의 책임과 담당 역할 등을 협약서에 명시해 사건 처리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소는 명확해진 협력 내용을 기반으로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이 더 강화되고 양육비 이행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전덕열 평생회원, 후원금 기부

전덕열 평생회원이 상담소 운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후원금 600만원을 기부하였다. 전덕열 회원은 상담소의 교육 프로그램인 어머니학교 졸업생으로 여성백인회관이 있던 때부터 오랜 기간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을 위한 안내 자원봉사자로 헌신해 왔다.

## 자원봉사학생 교육

본소에서 지난 8월 26일과 30일 양일 간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자원봉사학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대면, 일부 비대면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본소 교육부에서는 상담소의 역사와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가족법,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 하여 학생들은 상담소 소개 시청각자료를 시청하고, 강의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는 자원봉사 학생 50여 명이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관련사진 2면)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 8. 4.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8. 18.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8. 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상담원  
가족법교육(1)  
- 복미영 상담위원
- 8. 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상담원  
가족법교육(2)  
- 복미영 상담위원
- 8.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상담원  
가족법교육(3)  
- 복미영 상담위원
- 8. 26. 자원봉사 - 가족법교육(1)  
- 조은경/박상진 상담위원
- 8. 30. 자원봉사 - 가족법교육(2)  
- 조은경/박상진 상담위원

### 2021년 8월 상담통계

| 총 건수 4,779   |           |      |    |
|--------------|-----------|------|----|
| 법률상담 (4,311) |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지상 |
| 859          | 3,344     | 107  | 1  |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326          | 75        | 67   |    |

• 인터넷 정보 이용 36,416

2021년 8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79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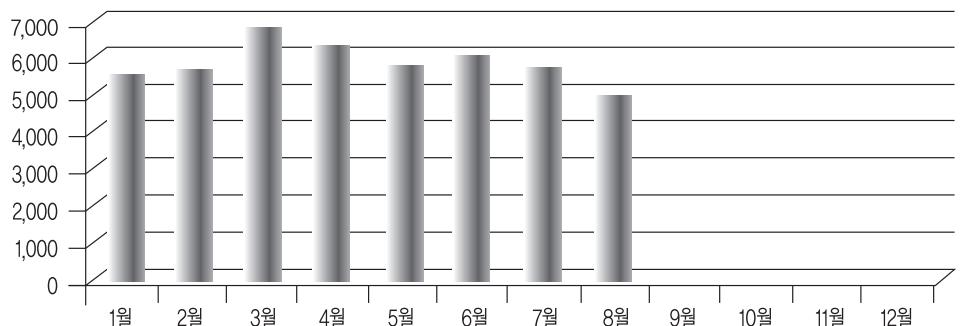
(90.2%), 화해조정 326건(6.8%), 소장 등 서류작성 75건(1.6%), 소송구조 67건(1.4%)이었다.

법률상담 4,31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7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8%), 위자료·재산분할(9.7%→10.3%), 친권·양육권(5.2%→6.0%), 인지(1.2%→1.6%), 입양(0.8%→0.9%), 혼인무효·취소(0.4%→0.6%), 이혼무효·취소(0.2%→0.3%), 유언·상속(6.4%→7.8%), 개명(0.5%→0.7%), 미성년후견(0.8%→0.9%), 가사기타

(5.8%→5.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파산(1.9%→2.6%), 개인회생(0.3%→0.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1%→0.4%), 형사기타(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1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59건(19.9%), 전화상담 3,344건(77.6%), 인터넷상담 107건(2.5%),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 ● 대학생 현장실습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2021.07.01.~ 8.31)

- 김은빈, 한해인

동국대학교 현장실습(2021.08.02.~ 8.27)

- 강유나, 구평우, 김진솔, 전해웅

##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 다양성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16일 조선일보(기사 21일자)와 본 상담소 2020년 이혼상담 통계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고맙습니다

## 후원 고맙습니다

###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학철, 이후정 님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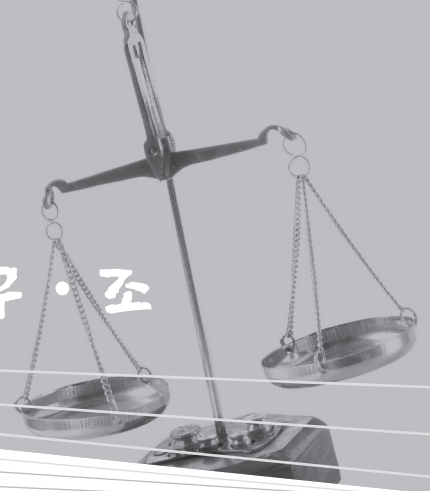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양육에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1-18

담당 : 옥치돈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5세)과 피신청인(남, 44세)은 2004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11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3회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에도 도박 중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관심하였다. 피신청인의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8. 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드단0000호(본소) 이혼 등, 2011드단0000호(반소) 이혼 등 사건의 2011. 9. 15.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7. 7.부터 2020. 10.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0개월간 월 1,000,00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

법률구조 2020-2-450

담당 : 류기정 변호사

사건명 : 살인등(피해자대리)

**내용 :** 피고인(남, 56세)과 피해자1(여, 50세)은 2003년 7월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피해자2(여, 16세), 피해자3(남, 13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혼인 후 피해자1과 부부싸움 끝에 당시 생후 17개월이었던 피해자2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1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2, 피해자3을 데리고 나와 수회 주소를 옮기는 등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였다. 2016년경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1의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1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1은 피해자2, 피해자3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020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1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2, 피해자3을 살해해 피해자1에게 큰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도구인 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4cm의 회칼을 휴대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2020년 3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1과 다투다가 피해자3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며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새벽 5시까지 수차례 다른 방을 오가며 피해자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숨겨놓은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2의 목 부위를 찔렀다.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1이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1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1의 목과 복부, 다리를 수차례 찌른 후 안방으로 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3의 목을 찔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1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3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고, 피해자2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1의 남동생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무기징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9. 17.)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피해자대리 외 생존한 피해자2를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법률구조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이 결정되었다.

**자신의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1-681**

**담당 :** 강은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2세)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10세)을 두었으나 협의 이혼하였다.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골프장, 휘트니스 위탁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신청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또다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패로 끝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신청인을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설상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증을 받은 일로 인해 유체동산 경매 집행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

력까지 더해지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혼 당시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과태료, 세금, 관리비, 주택 대출금, 휴대폰 미납요금 등은 모두 신청인에게 전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혼자 두 자녀에 대한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주택 대출금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발생시켜둔 각종 비용을 갚아나가고 있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1. 7. 2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시법원 2018 호협0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2019. 3. 5.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0,000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9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으나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힘겨운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가수활동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요양원, 노인정 등을 다니며 가수로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저녁에는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월세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호프집을 폐업하였다. 이후 배우자의 알코올중독, 경제적 무능력으로 잦은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배우자와 이

혼하였다. 신청인은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고가 가중되었고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당뇨병과 무릎관절, 연골, 어깨에 석회화 끼어있다는 진단을 받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했다.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났고, 건강상 문제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100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급비만으로는 3인가구의 생계비는 물론이고 이자상환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 오래 전 연락 두절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1-1-108**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와 피고(여, 60세)는 1987년 10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1992년경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러시아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불도저 기사로 근무한 후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1997년 7월경 작업장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갖은 고생을 한 끝에 2020년 8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는 1992년경 원고가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7. 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11**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1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의 나이에 식당, 공장을 전전하며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런 생활이 장기화되다보니 당뇨병, 고혈압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일용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렵게되자 1990년경 지인과 함께 호프집을 개업하였다. 장사가 곤잘 되었지만 외상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외상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경 IMF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세탁공장에 취업하였지만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녹내장이 심해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실직 후 신청인은 장기간 무직상태가 되어 더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웠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23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 자녀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의 유아인도청구에 대한 응소

**법률구조 2021-1-279**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유아인도(응소)

**내용 :** 청구인은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이다. 상대방 1은 26세, 상대방 2는 24세, 사건본인 1은 17세 그

리고 사건본인 2는 14세이다.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나이 터울이 있고 부모님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어릴 때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함께 하였다. 어머니가 가출한 2019. 4. 이후부터는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집안일이 대부분 상대방들의 몫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떠넘겼다. 청구인은 큰 방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 네 명은 작은방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작은방에는 책상과 옷장이 1개씩 있었으며, 네 명이 함께 누우면 바닥이 딱 찰 정도로 작은 방이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곧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저녁 이후 자주 외출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박도 하였는데, 심할 때에는 1주일에 5번 이상 외박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들을 자주 폭행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아버지인 청구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말로 할 때 똑바로 옆드려라. 움직이지 마라. 다른 데 맞아서 불구로 살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며 옆드리게 하고 몽둥이로 상대방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 나가라.”며 자주 상대방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청구인은 2017. 5.경 상대방 1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에 돌아온 상대방 1의 머리, 어깨, 엉덩이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렸다. 2019. 1.경 상대방 1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게 되자, 청구인은 프라이팬을 내려치고 큰 의자를 내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거실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꺼내 “오늘이 날이다. 다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상대방 1이 반찬을 버렸다는 이유로 “대가리 쪼개 버리겠다.”며 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하며 파리채로 손바닥을 2대 때렸고, 상대방 1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와 이 새끼 또라이구만. 너 정신병원 보내야겠다.”며 폭언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자주 “안경 벗어라. 싸다구 올려 버린다. 아구창 찢어버린다. 확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사람이라면 말을 들어야지. 소 돼지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야. 넌 동물이니까 맞아야 해.”라고 폭언 하였다. 또한 밥상을 엮거나, 전자레인지, 숟가락, 밀가루, 음식들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반찬통과 휴지를 상대방 1에게 던지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도 파리채를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

르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하는 폭력과 폭언을 여과 없이 보고 들으며 자라왔다. 청구인은 2019. 7. 집 마당에서 상대방 2가 친모 가출 사실확인서 발급일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방2에게 옆드리게 한 후 밀대자루(길이 1m)를 이용하여 상대방 2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대방 2는 멍이 매우 심하게 들었으나, 상해 부위가 엉덩이이고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황을 목격한 상대방 1이 청구인을 만류하자 위 밀대자루를 이용하여 상대방 1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상대방 1이 사건본인들이 듣고 있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자, 청구인은 “아니. 애들도 이거 봐야 해. 거짓말하면 이렇게 쳐맞는구나 하고 알아야 해. 너희들이 사람새끼여?”라고 소리를 질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집 안방에서, 청구인이 상대방 2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고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나와 상대방들을 향해 흔들면서 “너희들은 안되겠다. 끝장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여 상대방들을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8.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쉼터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초본열람금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2020. 12. 청구인이 거주지로 찾아와 배달기사를 통해 열린 문으로 집 안에 물건과 편지를 놓고 가는 일이 발생 하였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사건본인 1은 그 후 초인종이 울리거나 택배가 오면 청구인이 다시 찾아왔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한동안 외출을 못 할 정도로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2021. 1. 이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들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들은 2021. 5. 말경 서면을 송달받게 되어 본 상담소에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청구취하(2021.8. 6)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서가 송달된 이후 청구인이 유아인도청구 취하함.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 2021년 10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0월 11일, 10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일 시     | 강 의 제 목                    |
|---------|----------------------------|
| 10월 28일 |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
| 11월 25일 |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 정     | 강 의 제 목                            | 강 사                            |
|---------|------------------------------------|--------------------------------|
| 9월 9일   |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 황순찬 외래교수<br>(성공회대학교<br>사회복지학과) |
| 10월 14일 |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br>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                                |
| 11월 11일 |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
| 12월 9일  |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1년 10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10월 27일 (수)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1년 10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실천하는 청렴으로 누리는 평등사회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